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8.

발의자 : 박광온 · 김해영 · 김현권
백혜련 · 김영진 · 이춘석
안민석 · 전현희 · 권칠승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,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과 비교할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,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5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 한 자에게는 <u>50만원</u>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 ② (생 략)	제18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<u>500만원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